

2021. 08. 27(금)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팀 월례발표회 발표문

조선후기 - 일제시기 호적 양식 변화와 의미

이유진

<목차>

1. 머리말
2. 시기별 호적의 내용과 양식
3. 호구 파악 실태 - 행정단위별 총액과 공동납을 중심으로
4. 호의 의미 - 주민등록, 가족, 신분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의 호적 제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전근대에 왕조가 교체되어도, 전근대의 종막을 알리며 식민지 권력이 이 땅을 지배할 때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도 호적은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2008년 1월 공식적으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호적 제도는 장기적으로 이어져왔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호적이라는 용어가 대체로 친숙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호적’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할지라도 실제로는 각 시기별로 호적이 뜻하는 바가 달랐다. 동아시아에서 전근대 시기의 호적은 중앙집권적 지배 체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부세와 각종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 나라의 백성을 파악하여 작성하는 대장을 의미하였다. 호적은 왕조별로도, 심지어 같은 왕조 내에서도 시기별로도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근대의 호적은 모든 국민을 파악하여 국세(國勢)를 가늠하기 위한 센서스로 전근대 호적과는 차별화된다. 즉 호적이라는 장부는 제도를 주관하는 국가의 정책은 물론 그것이 만들어지는 사회 등 여러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위에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에서 일제시기까지 시기별로 호적대장을 검토해보려 한다. 17C 말부터 1896년 초까지 제작된 조선호적, 1896년부터 1908년까지 제작된 신호적(=신식호적, 광무호적), 1909년 이후 제작된 민적(이후 호적)이 그 대상이 된다. 호적의 양식과 내용을 토대로 각 장부가 만들어졌던 시기의 부세 제도와 사회상과의 연관성을 탐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 장부 간의 단절성 못지않게 직전 장부로부터 이어지는 지속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시기별 호적의 내용과 양식

호적은 백성을 호(戶) 단위로 기재한 장부이다. 조선왕조에서는 전국 군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호적대장을 작성하였으며 여러 부의 사본을 만들어 중앙정부(호조, 한성부), 도(道), 군현

에 한 부씩 보관하였다. 원칙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각 호에서 호 구성원(주호와 가족+예속인)을 기재한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에 제출하면 각 행정단위별로 호구를 수합하여 중초(中草)를 작성하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호적대장을 완성하게 되어있었다.

현존하는 조선후기 호적대장은 주로 17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에 걸쳐 제작된 것이다. 자료가 남아있는 지역은 대구·울산·단성 등 대체로 경상도 등지에 편중되어 있다. 호적중초는 대장에 비하여 더 많은 지역에 남아있고 그 중 제주도의 자료가 방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을 살펴보면 각 호는 면-리 아래에 5호 1통으로 작통되어있고 통에는 통수(統首)를 둔다. 각 호에서는 주호(호의 대표자)와 처의 경우 성명, 직역(職役), 연령, 본관, 사조(四祖-父·祖·曾祖·外祖) 정보를 기재한다. 주호의 가족원은 주호와 관계(子·女·婦·孀 등), 직역, 성명, 연령 정보를 기재한다. 호에 속한 예속인은 크게 노비와 고공으로 나누어진다. 노비는 성명과 연령은 물론 때에 따라 그 기원을 알 수 있도록 父母 정보를 함께 기재하기도 한다. 고공 역시도 성명, 연령 정보를 기재한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호적상의 호(戶)는 여러 단계를 거친 편제호일 뿐 자연호(내지는 자연가)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¹⁾ 기실 이 시기 호적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편성과 관련된 정보뿐이다. 일단 기재된 사람의 경우 가족 관계, 연령 등은 쉽게 알 수 있고, 중앙이나 지방 관청 혹은 사인(私人)과 관련된 역(役) 정보를 통하여 해당인의 사회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집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거주지의 경우 호가 소속된 행정단위를 토대로 군현-면-리까지는 대략 추정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거주 지점을 특정할 수 없다. 호적을 통해서는 호 구성원이 살고 있을 가옥과 관련된 정보 역시 알 수 없다. 당시에는 물리적인 형태의 가옥이 아니라 사람이 가족관계와 주-예속 관계로 결합된 것을 호적상의 호로 인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에 대하여는 4장에서 부연하겠다.

신호적은 1896년(건양 원년) 9월 1일 칙령 61호 <호구조사규칙>과 9월 3일 내부령 8호 <호구조사세칙>이 반포된 이래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기 전까지 약 10여 년간 편찬되었다. 조선후기 호적을 구호적(구식호적), 이 시기 호적을 신호적(신식호적)으로 칭하기도 하며, 광무 연간에 주로 제작된 관계로 광무호적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전의 호적은 재정관청인 호조(戶曹)에서 관할하였는데, 신호적의 작성과 관리는 내부(內部) 판적국(版籍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3년에 한 번 제작되던 호적은 이제 매년 제작되며²⁾ 10호를 1통으로 작통하였다.³⁾ 내부에서는 통일된 호적지와 통표 양식을 전국에 배포하여 각 호에서 호적지를, 각 통의 통수가 통표의 공란을 사항별로 채워 넣어 제출하게 하였다.⁴⁾

사람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이전 시기 호적과 차별화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처

- 1) 권내현, 2001 <朝鮮後期 戶籍의 作成過程에 대한 分析>《大東文化研究》39; 김건태, 2001 <조선후기의 인구파악 실상과 그 성격-단성현 호적 분석>《大東文化研究》39; 김건태, 2002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단성호적을 중심으로>,《大東文化研究》40; 정진영, 2002 <조선후기 호적대장 '戶'의 編制 양상 - 『제주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중초』(1843-1907)의 분석 ->《역사와 현실》45; 정진영, 2003 <조선후기 호적 "호"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大東文化研究》42; 정진영, 2006 <호적대장에 등재된 호구의 성격>《韓國史研究》132 등 참고.
- 2) <戶口調査規則> 第三條 戶籍과 統表는 漢城五署와 各府牧郡에서는 每年一月內로 收聚修正호야 二月內로 漢城府와 各該道觀察府에 送致호면 漢城府는 三月內로 內部에 呈納호고 各道觀察府에서는 四月內로 內部에 呈納호면 內部에서 五月內로 戶籍과 統表를 編集호야 上奏케 함.
- 3) <戶口調査規則> 第二條 十戶를 聯合호야 一統을 作호고 該統內에 文算이有호고 行爲端正호인 人으로 統首를 定호야 一統內人民을 領率함.
- 4) <戶口調査細則> 第一款 戶籍 第一條 第二條:《官報》423호(1896년 9월 3일) 부록 戶籍式樣 統表式樣

를 제외한 호주(호의 대표자)만 사조 파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호주의 생부(生父)가 독립된 란(欄)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계 중심 종법 질서가 강화된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의 예속인에 해당하는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기구(寄口)·고용(雇傭)란에 성별에 따라 숫자로만 남게 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신호적은 원칙적으로 거주현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게 되어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 호적과 양식상 차별화된다. 부모형제자손이어도 따로 사는 경우에는 각각을 한 호로 세워야 했다.⁵⁾ 양식을 보아도 호마다 가택에 관한 정보(所有·借有 여부, 瓦家·草家 여부, 칸수)를 기재하게 하며 이주 시에는 새로 전입한 곳의 호적지에 전에 살던 곳과 이거날짜를 기록하게 하였다. 게다가 각 호별 인구 현황과 가택 현황이 통표에서 다시 취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적에서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인구가 집집마다 파악되었던 것은 아니다.

1909년 3월 법률 제 8호로 공포된 민적법이 실시된 이후 민적부가 만들어졌다. 1922년 조선후적령이 공포되기 전까지 조선의 호적은 ‘민적’으로 일컬어졌다. 호를 단위로 한 장의 민적을 제작하며 출생,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양자,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등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에 의하여 민적을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게 하였다. 민적부는 경찰서 및 순사주재소에 비치되었다. 1914년 총독부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이 완료된 후 1915년에는 민적 사무를 면장(面長)이 담당하게 하고 부적을 없애는 등 여러 차례 제도를 개정하였다.⁶⁾

양식을 보면 호의 본적(本籍)을 도-군-면-리-통-호에 맞춰 적게 되어있다. 당시 10통이 1호였다고 하는데 신호적의 작통 원칙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은 부모성명, 출생순서, 본(본관),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며, 입적하거나 제적될 때 사유를 적는다. 호의 대표자인 호주는 그 외에도 이전 호주 정보, 호주가 된 원인 및 시기를 기록하였다. 호주의 사조정보는 더 이상 파악되지 않은 것은 신분제의 공식적 소멸과 관계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조사사업 완료 이후에는 본적에 통호수 이외에도 지번(地番)을 적어넣기도 했다고 한다. 직업란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본적란에 직업을 함께 적기도 하였다.

3. 호구 파악 실태 - 행정단위별 총액과 공동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통시적으로 여러 시기의 호적을 살펴보았다. 사실 시기와 관계없이, 혹은 정치 주체가 누구인지와도 관계없이 철저한 호구 파악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호구를 누락하면 처벌받는 것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앞 장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조선후기와 대한제국기에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집과 사람이 호구로 파악되지 않았다. 두 시기를 걸쳐 호는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편제되었다.

호적대장에서 호 편제는 당시 행정제도, 부세제도와 운용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조선 중앙정부는 소위 재정의 중앙집권화로 일컬어지는 변화를 꾀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각 기관별로 필요한 예산에 따라 액수를 확정 후 이를 각 군현에 정수로 배분하였으며, 중앙 재정 기관(호조, 선혜청 등)이 각 군현으로부터 상납된 부세 수입을 수합하고 이를 다시 각 기관으로 배분하였다. 총액을 감당하기 위하여 군현에서는

5) <戶口調査細則> 第一款 戶籍 第三條 戶主의 父母兄弟子孫이라도 各戶에 分居호야 戶籍이 別有호는 該籍內에 填入지 아니호야 人口가 疊載지 아니케 하며 一戶主가 原戶는 成籍호였는디 他戶에 別居호야 別居호는 戶籍을 新成호는 時는 該籍內에 原籍 某地方을 欄外另行에 註明호야 考閱에 便易케함.

6) 조석곤, 1990 <광무연간의 호정운영체계에 관한 소고>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이정선, 2009 <한국 근대 ‘戶籍制度’의 변천-‘民籍法’의 법제적 특징을 중심으로->《한국사론》 55

관할 내의 민을 더 강하게 장악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군현 하부의 면-리까지도 부세 행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위로 부각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호(戶)는 통(統)으로 작통되며, 통의 상위에서는 공식 행정단위인 리(里)-면(面)에 소속되었다.⁷⁾ 이에 따라 이념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배력은 도-군현-면-리를 거쳐 통-호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조선 중기의 경상도 안동부 부북 주촌 호적(1528-날장 형태)은 물론, 17세기 초반에 제작된 경상도 산음호적·울산호적에서는 작통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호의 첫 사람(주호) 앞에 크고 굵은 글씨로 ‘戶’라고 표기하여 각각의 호를 구분하였다. 호적대장에서 5호 1통의 편제가 등장한 것은 1675년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이 반포된 이후이다.⁸⁾ 오가통사목에서는 면에 풍헌(風憲)·약정(約正) 등 면임(面任)을, 리에 존위(尊位) 등 리임(里任)을 두어 부세 행정과 관련한 책임을 부여하였다. 통에는 통수를 두어 마찬가지로 책임을 부여하였다. 군현-면-리-통-호로 이어지는 체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중앙정부에서 군현에 할당한 부세 총액은 군현 예하의 면으로, 다시 그 예하의 리로 분배되었다. 소위 이정법(里定法)이 실시되면서 행정단위 내에서 군역자 공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면리대정(面里代定)이 강요되었고 각종 환곡과 잡역제도 면리 단위로 분정되었다.⁹⁾ 뿐만 아니라 중앙 기관에 소속된 공노비의 신공 역시도 액수에 따라 군현→면→리로 떠넘겨졌다.¹⁰⁾ 면리에서는 자체적으로 면계(面契)·동계(洞契)를 결성하고 면중(面中)·동중(洞中) 등 합의체를 통하여 할당된 각종 부세를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분정할지, 누구를 호로 편제하여 올릴지 등을 정하였다.¹¹⁾ 이렇게 행정단위를 기반으로 하여 총액 할당에 대응하는 공동납은 19세기 들어 매우 활성화되었다.

공동납 관행이 호적에 미치는 영향은 명백하다. 공동납이 활성화되면 호적 본문에서 거의 모든 호가 균질해진다. 군역 부담자는 실제로 신역을 지든 납포(納布)를 하든 1인분의 책임을 지게 되어있었는데, 이제는 그 책임을 행정단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진다. 모두가 마을에 할당된 군역 부담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역 1인분을 오롯이 맡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호적대장에 각 사람의 직역, 특히 군역이 자세하게 기재될 동력이 사라지게 되고 공식적으로 군역을 면제받는 유학(幼學)의 비율이 높아진다. 호주와 처의 사조 정보, 특히 그들의 직역 역시도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현존하는 호적대장에서 19세기 중반 이후의 호적은 ‘주호+처+비 1명’이라는 일괄적 호구성, 너무도 자주 등장하는 주호와 처의 ‘사조부지(四祖不知)’ 등 지나치게 단조로운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19세기 호적대장 본문이 실제 사회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

7) “每三年，改戶籍，藏於本曹·漢城府·本道·本邑。”京外以五戶爲一統，有統主。外則每五統有里正，每一面有勸農官。地廣戶多，則量加。京則每一坊有管領。”(《經國大典》戶典 戶籍)

8) 《備邊司謄錄》 31책, 속종 1년(1675) 9월 26일 「五家統事目」

9) 김선경, 1984 <조선후기의 조세수취와 面.里 운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형, 1982,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형, 1984 <18세기 里定法의 展開-村落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진단학보》 58; 오영교, 1994 <17世紀 鄉村對策과 面里制의 運營> 《東方學志》 85; 송양섭, 1995 <19세기 良役收取法의 變化- 洞布制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89

10) 도주경, 2019 <18세기 내시노비 비총제의 시행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88

11) 李庸起, 2007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 전남 長興郡 蓉山面 語西里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양섭, 2019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面中’과 잡역운영> 《역사와 현실》 112; 송양섭, 2021 <19세기 거제 구조라리의 洞中과 洞錢의 운영> 《한국문화》 94; 김건태, 2019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동아문화》 57; 김건태, 2020 <19세기 공동납의 실상>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호혜와 협동의 사례 탐구-” 발표문(2020. 10. 16)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질함 가운데 보이는 약간의 차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총액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 행정단위에서는 하위 행정단위로부터 취합한 호를 나름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기도 하였다. 빈번하게(식년마다) 소속이 옮겨지는 호나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채 복수의 면리에 중복으로 기재된 호가 존재한다.¹²⁾ 특히 중복 기재호는 19세기 이후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호적에서 호가 균질해지는 것에 대한 반작용인 것일까. 복수의 행정단위에 중복하여 기재된 호의 주호는 호적에 한 번만 기재되는 호의 주호보다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은 부세 부담을 졌을 것이다.

군현별로 기재 내용이 달라지기도 한다. 군현별로 호당 구수에 차이가 나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주호 예하 가족과 예측인의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결과이다. 연령별·성별 인구 피라미드를 그렸을 때 15세 이하 연소자가 상대적으로 덜 파악되는 것은 여러 호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상도 연양현의 사례는 일찍부터 주목받아왔다. 18세기 말 이후 연양현 호적에서는 상당수의 호의 말미에 주호와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는 협인(挾人)과 그의 가족원을 함께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이 호적의 호당 구수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7.7~9.3명, 경상도 전체 평균은 4.3명 정도).¹³⁾ 군현별로 혹은 같은 군현 내에서 면별로도 호적에 기재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였으나 식년마다 전국 군현의 호적대장을 받아보는 중앙정부에서는 한 번도 이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없다. 각 군현에 할당된 총액만큼 호구수가 확보되었는지는 책 말미의 총합 통계인 (도)이상조를 참고하면 될 일이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각 군현에서 일정 이상의 호구 총액이 유지되고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1896년 이후 제작된 신호적에서는 전국에 단일한 호적표 양식을 배포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역차를 소개해버렸다. 그럼에도 여전히 군(郡)별로 기재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 광무 4년(1900)에 제작된 경상북도 경산군 북면 호적에서는 호주 직업란에 유학(幼學)과 농(農)/농인(農人)을 동시에 기재하였으며, 사조 역시 학생(學生)등을 기재하여 조선 후기 호적에서 호주와 사조의 직역을 기재하였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동거친속 중 혼인한 여성(母妻·婦 등)의 연령 대신 본관만 적어두었다. 반면에 같은 해에 제작된 경상북도 의흥군 신남면·부동면 호적에서는 호주의 직업란에 사(士) 혹은 농(農)이라 적혀있고, 사조는 이름만 등장하며,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동거친속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다.

양식과는 달리 신호적 단계에서 모든 집, 인구가 파악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 실재하는 모든 집을 호(戶)로 파악했다면 호적표에 기재된 통호수가 주소를 의미해야 하겠으나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같은 호에 부여된 통호수가 달라져서 주소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¹⁴⁾ 또한 실제로는 따로 살면서 하나의 호로 기재된 경우가 이미 보고된 바 있다.¹⁵⁾ 이는 중앙정부가 천명한 원칙을 어긴 것이나 그 지역에서 나름의 원리에 따라 통용되고 있는 관행으로 보인다. 1호당 3냥의 호세를 부담해야 하다 보니¹⁶⁾ 세원을 늘려보려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반하여 각

12) 이유진, 2021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의 변화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장.

13) 임학성, 2002 <조선 후기 경상도 彦陽지역 '主-挾'型 家戶의 族的 결합양태- 1861년도 彦陽戶籍의 사례 분석->《國史館論叢》100

14) 이유진, 2016 <광무호적의 호구변동 사례 연구>《역사민속학》51

15) 이유진, 2019 <대한제국기 호구 변동의 의미 -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호적대장과 목장양안 비교 분석>《한국학연구》5

16) 이세영, 1992 <대한제국기의 호구변동과 계급구조>《역사와 현실》7

군에서는 예하의 면별로 혹은 리까지 호수를 고정시켜버렸다. 이를 맞추기 위하여 상위 행정단위에서 하위 행정단위의 호수를 조정하는 이전의 관행 역시 지속되었다.¹⁷⁾ 당시 조세 제도에 일부 변화가 수반되었지만 총액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지역 내 공동납 관행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수도인 한성부의 경우 다양한 직업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10세 이하 연소자가 충실히 기재된 편이고¹⁸⁾ 호적표에 각종 가게와 빈 집[空家]이 나타나는 등 ‘집’ 단위의 기재라는 원칙을 지켜내고 있었다. 행정의 중심지이므로 호구 파악의 원칙이 더 강하게 관철되었을 것이다.

아무튼 인구가 현실에 가깝게 파악되기 시작한 것은 통감부의 지휘에 따라 1906년 9월 관세관관제가 실시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호구조사를 진행하면서였다.¹⁹⁾ 내부의 1906년 통계치는 138만여 호 579만여 명이었는데, 1907년 5월 경무고문부의 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333,087호 9,781,671인이나 파악되었다고 한다.²⁰⁾ 이 때 하나의 호로 기재되는 기준은 침식(寢食)을 함께하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²¹⁾ 개별 세대에 가까운 개념을 추구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후 제작된 신호적에서는 연소자가 대폭 증가하여 연령별·성별 인구 분포가 자연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²²⁾

이어지는 민적부 단계에서도 1915년까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호구조사를 시행하였기에 이전보다는 철저한 인구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 초기 민적은 조선의 관습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신호적처럼 (대체로) 현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점점 본적지(출신지)를 기반으로 한 가족등록으로 변화해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⁴⁾

4. 호의 의미 - 주민등록, 가족, 신분

조선 호적대장에 기록되는 내용은 《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戶 X부 X방 제 X리{지방에서는 X면 X리로 칭한다}에 사는 職 성명, 나이와 간지[年甲], 본관, 사조(四祖), 처 모씨 나이와 간지 본관 사조{종친은 자기의 직함과 처의 사조를 기록한다. (생략) 서인(庶人)²⁵⁾은 자기와 처의 사조를 쓰고 서인 중에 사조를 알지 못하는 자의 경우 다 기록할 필요는 없다.}, 함께 사는[率居] 자녀 XX 나이와 간지{사위는 본관을 함께 적는다}, 노비(奴婢)·고공(雇工) XX, 나이와 간지²⁶⁾

17) 이유진, 2019 앞의 논문

18) 조성윤·조은, 1996 <한말의 가족과 신분 -한성부 호적 분석> 《사회와 역사》 50

19) 조석곤, 앞의 논문.

20) 이정주, 2017 <구한말 호적에 나타난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의 특징> 《한국학연구》 46

21) 조석곤, 앞의 논문

22) 임학성, 2017 <20세기 초 慶南 草溪郡 주민의 거주 양상> 《한국학연구》 46

23) 그러나 조선에서 간이국세조사가 실시된 1925년부터의 인구자료를 신뢰할 만하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권태환·신용하, 1977 <조선왕조시대 인구추정에 관한 일시론> 《동아문화》 14

24) 손병규, 2006 <한말-일제초 제주 하모리의 호구파악-光武戶籍과 民籍簿의 비교 분석-> 《大東文化研究》 54; 손병규, 2008 <明治戶籍과 光武戶籍 비교연구> 《泰東古典研究》 24

25) 생략된 부분에서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서인은 왕실과 관계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인다.

26) “戶某部某坊第幾里外則稱某面某里。住某職姓名·年甲·本貫·四祖, 妻某氏·年甲·本貫·四祖宗親, 錄自己職銜·妻四祖, 儀賓, 錄自己職銜·四祖·尙某主, 庶人, 錄自己及妻四祖, 庶人不知四祖者, 不須盡錄., 率居子女某某·年甲女壻, 則并錄本貫., 奴婢雇工某某·年甲” (《經國大典》禮典 戶口式)

주호(호의 대표자)와 처에 대해서는 성명, 직역, 연령, 본관, 사조 정보를 기재한다. 데리고 사는[率居] 자녀는 주호와의 관계(자·녀 등), 성명, 연령 정보를 기재한다. 호에 속한 노비와 고공 역시도 성명, 연령 정보를 기재한다. 이처럼 경국대전 호구식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단혼 소가족과 노비·고공 등 예속인을 아울러 하나의 (이상적인) 호(戶)로 규정하고 있었다.

인적장부에 개개인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묶어 호(戶)라는 단위로 만들어 등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호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은 호의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²⁷⁾ 가족은 호를 이어나가는 데 필수적인 존재이다. 농업이 근간인 사회에서 가족은 재생산의 최소 단위이다. 사조 계보에서 알 수 있듯 주호와 처는 누군가로부터 이어져 온 존재이며, 주호의 유고 시에 적합한 가족 구성원(주로 아들과 처)이 주호를 계승하게 된다[~故代~].

호가 계보를 가지며 계승되는 가족이라는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른 자료에 등장하는 호(戶)의 의미를 참고할만하다. 대개 역(役) 관련 장부는 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단위로 제작된다. 현존하는 군안(軍案)과 역도(驛道)의 형지안(形止案)이 그러하다. 그런데 역도 형지안 중 《사근도형지안(沙斤道形止案)》에서 역리와 역노비는 모두 호(戶) 단위로 기록되어 있다. 주호인 역리·역노비는 사조 정보를 기재하며, 그 호의 구성원은 그의 가족원이면서 해당 역을 부담하고 있거나 미래에 부담할 자들이다. 역리·역노비 등 역역(驛役)은 대개 세습된다. 혈연을 기반으로 역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호(戶)의 형태를 취한 것이 아닐까.

아울러 《경국대전》 호구식의 규정은 대체로 신분제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사조 정보 기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출신’이다. 부계로 3대나 되는 한참 전의 조상까지 추적할 뿐만 아니라 호의 대표자는 물론 처의 사조까지 총 네 갈래의 계보(주호의 부계·모계+처의 부계·모계)가 파악된다. 게다가 이러한 원칙은 높은 신분의 주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주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실제로 조선후기 호적대장에서는 주호와 처가 노비일지언정 형식적으로는 사조가 모두 기재되었다. 신분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회일수록 지위 상승의 요건은 까다롭고 하락하기는 쉽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직역은 부모와 그 조상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며 부모 중 더 ‘낮은’ 쪽의 직역과 대체로 비슷한 위상이 된다. 조상의 출신으로 인하여 양천이 분류되며, 같은 양인이어도 군역자와 면제자가 분류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행정단위별 총액제와 공동납 관행으로 인하여 호적 본문에서 직역은 높아졌으며 결과적으로 상향평준화되었다. 부세 행정에서 개개의 역(役)이 점하는 위상이 낮아지면서 호적에서 역 관련 기재가 매우 간략해졌고, 주호는 대부분 유학을, 그와 처의 사조는 학생을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조 기재가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 조선 사회에서 부모의 신분은 여전히 나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신호적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노비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문서 상 신분은 사라졌다. 신호적 양식을 보면 이전과 달리 ‘직업(職業)’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며 이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을 분류하는 메이지 호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⁸⁾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앞서 지적했듯이 신설된 호주의 직업(職業)란에 유학(幼學)

27) 실제로 호적에서 가족 형태는 단혼 소가족, 직계 준비속이나 방계 친족을 포함하는 확대가족, 1인호 등 다양하다.

28) 손병규, 2008 <明治戶籍과 光武戶籍 비교연구> 《泰東古典研究》 24; 이정선, 2009 <한국 근대 ‘戶籍制度’의 변천-‘民籍法’의 법제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55

등 직역이나 품계(品階)를 기재하는 기존 관행을 이어나갔다. 안동 지역의 신호적에서는 제도로 폐지되었고 주호의 가족원도 아닌 비(婢)가 동거친속란에 기재된 사례도 발견된다. 아울러 호주로 한정되었지만 여전히 사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학생(學生)과 같은 사조의 직역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기도 하였다.

한편 신호적은 호주와 동거친속에게만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전 시기의 예속인이나 협인에 해당하는 기구·고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숫자로만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구·고용은 호의 전체 규모(현존 인구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들이 되도록 독립된 호를 세우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호의 의미가 ‘주호와 동거 가족’으로 한정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민적 편제 방식은 이전의 호적 편제 방식과 달랐다. 사실 조선 민적의 ‘호’는 메이지 호적의 ‘가(家)’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법률적으로 구성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호주는 구성원에 대하여 강력한 권한을 발휘할 수 있었다. 각 개인은 호적에 등록되어 호주와의 관계 속에서 친족 법상의 ‘신분(身分)’을 부여받았다.

식년마다 혹은 매년 호구단자나 호적지를 제출하였던 것과 달리 이미 만들어진 민적은 호주가 제적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조선후기 이래 혼인한 장남은 가족 중 제일 먼저 분호(分戶)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장남이 호를 계승하는 것이 원칙²⁹⁾이므로 분호할 수 없었다. 호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 역시 식년마다 혹은 매년 일정 비율의 호가 장부에서 탈락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거주지 행정단위에 소속되는 호적 편제가 익숙한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본적지주의는 낯선 개념이었다. 반면에 민적에 가족원을 기재하는 방식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다. 호주(戶主)가 호를 대표하고 호주의 가족이 처와 직계존비속-방계 순으로 기재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남이 호주를 계승하는 것은 이전의 부계친족 중심의 종법질서 하에서 장남이 가계를 이어받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었다.³⁰⁾ 한편 직전 시기 호 구성원이었던 기구·고용은 이제 호주의 혈연가족이 아닌 관계로 따로 분리되어 주가(主家)의 민적 아래 부적(附籍)에 기재되었다. 기재 양식이 동일하여 부적을 떼면 일반 민적과 다를 것이 없었고, 2015년에는 부적 자체가 폐지되고 일반 민적화 되었다.³¹⁾ 이렇듯 조선왕조의 신분 질서는 문서상으로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으며 가족 규정 역시도 조선의 기존 관습이 일시적으로 통용되었을 뿐 일본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5. 맺음말

(생략)

29) 鄭肯植, 2013 <한국의 가계계승에서 여성의 지위> 《法史學研究》 47

30) 손병규, 2007 <民籍法の ‘戶’ 규정과 변화-일본의 明治戶籍法 시행경험과 ‘朝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 《大東文化研究》 57

31) 이정선, 앞의 논문 291쪽 주 47 참고

<참고문헌>

《經國大典》

《沙斤道形止案》

《(舊韓國)官報》

권내현, 2001 <朝鮮後期 戶籍의 作成過程에 대한 分析>《大東文化研究》39

권태환·신용하, 1977 <조선왕조시대 인구추정에 관한 일시론>《동아문화》14

김건태, 2001 <조선후기의 인구파악 실상과 그 성격-단성현 호적 분석>《大東文化研究》39

김건태, 2002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단성호적을 중심으로>《大東文化研究》40

김건태, 2019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동아문화》57

김건태, 2020 <19세기 공동납의 실상> “조선시대 사회조직과 공동체의 운영원리-호혜와 협동의 사례 탐구-” 발표문(2020. 10. 16)

김선경, 1984 <조선후기의 조세수취와 面里 운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형, 1982, <朝鮮後期 面里制의 性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준형, 1984 <18세기 里定法의 展開-村落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진단학보》58

도주경, 2019 <18세기 내시노비 비총제의 시행과 운영>《조선시대사학보》88

손병규, 2006 <한말-일제초 제주 하모리의 호구파악-光武戶籍과 民籍簿의 비교 분석->《大東文化研究》54

손병규, 2007 <民籍法의 ‘戶’ 규정과 변화-일본의 明治戶籍法 시행경험과 ‘朝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大東文化研究》57

손병규, 2008 <明治戶籍과 光武戶籍 비교연구>《泰東古典研究》24

송양섭, 1995 <19세기 良役收取法의 변화- 洞布制의 성립과 관련하여>《한국사연구》89

송양섭, 2019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面中’과 잡역운영>《역사와 현실》112

송양섭, 2021 <19세기 거제 구조라리의 洞中과 洞錢의 운영>《한국문화》94

오영교, 1994 <17世紀 鄉村對策과 面里制의 運營>《東方學志》85

이세영, 1992 <대한제국기의 호구변동과 계급구조>《역사와 현실》7

李庸起, 2007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 전남 長興郡 蓉山面 語西里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유진, 2016 <광무호적의 호구변동 사례 연구>《역사민속학》51

이유진, 2019 <대한제국기 호구 변동의 의미 -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호적대장과 목장양안 비교 분석>《한국학연구》5

이유진, 2021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의 변화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선, 2009 <한국 근대 ‘戶籍制度’의 변천-‘民籍法’의 법제적 특징을 중심으로->《한국사론》55

이정주, 2017 <구한말 호적에 나타난 성별·연령별 인구 구조의 특징>《한국학연구》46

임학성, 2002 <조선 후기 경상도 彦陽지역 ‘主-挾’型 家戶의 族的 결합양태- 1861년도 彦陽 戶籍의 사례 분석->《國史館論叢》100

임학성, 2017 <20세기 초 慶南 草溪郡 주민의 거주 양상>《한국학연구》46

鄭肯植, 2013 <한국의 가계계승에서 여성의 지위>《法史學研究》47

정진영, 2002 <조선후기 호적대장 ‘戶’의 編制 양상 - 『제주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중초』

(1843-1907)의 분석 -> 《역사와 현실》 45

정진영, 2003 <조선후기 호적 "호"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大東文化研究》 42

정진영, 2006 <호적대장에 등재된 호구의 성격> 《韓國史研究》 132

조석곤, 1990 <광무연간의 호정운영체계에 관한 소고>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조성윤·조은, 1996 <한말의 가족과 신분 -한성부 호적 분석> 《사회와 역사》 50